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9. 2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00호로 2025년 9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아울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 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8. 7.~8.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됨.

○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부칙으로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함.
- 5개의 장(章)에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항 중 상위법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3개의 장(章)과 11개의 조문의 구성으로 변경함.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1)에 근거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법 제60조제3항2)에 근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개최 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임기 규정(임기 2년, 한차례 연임)을 신설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계획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2022:** (1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존속기한 연장
(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2023:** (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2회)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2024:** (1회) 건축안전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2회)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번 전부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일반적인 재정운용 원칙, 기금 운용 및 회계 관련 규정 일부 조항이 삭제되나 이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하는 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